

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23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8. 14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시장에게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 법률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의 구체적 제정과
-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임

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에 ‘안전’ 문구 추가(안 제1조)
- 조례 적용 범위 명확화(안 제2조)
-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에 ‘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’ 추가(안 제3조)
-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신설(안 제4조의2)

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 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 : 2023. 5. 23. ~ 2023. 6. 12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” 를 “조례는” 으로, “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” 을 “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안산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중 “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 을 “법”으로, “조례가” 를 “조례로” 로, “「관광진흥법」 제50조 제1항 및 제3항과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 제1항” 을 “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제1항과 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제1항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항만법」 제2조” 를 “「항만법」 제2조제1호” 로, “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조례가” 를 “여객 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” 로,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한다.

- ①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.

제3조 중 “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” 을 “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” 로, “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” 을 “시설상태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” 로 한다.

제4조제6호를 삭제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 (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)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시장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다만, 이동식화장실과 간이화장실은 제외한다.

1.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 공중화장실
2. 법 제3조제10호의 도선장에 설치한 공중화장실
3. 법 제3조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야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
4.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화장실

제11조제1항 중 “영 제8조제1항 단서의” 를 “영 제8조 단서에서” 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관 실·과	환경정책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환경정책과장 최 미 연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통합물관리팀장 조 일 장
	담 당 자 성명·전화	홍 지 창 (행정 2244)

[별지 제4호서식]

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

신청인	성 명			전화 번호		
	주 소					
	건물 소유주와의 관계					
건축물 현황	건물명			층 수	지하: 층/지상: 층	
	주용도		연면적	m ²	준공일	
개방화장실현황	면 적	총면적: m ² (남자: m ² /여자: m ²)				
	개방화장실 층		층			
개방 시간	상시개방(), 부분개방()					
시설현황	변 기	소변기	개			
		대변기	총 개 (남자: 개, 남장애이용: 개 / 여자: 개, 여장애이용: 개)			
	안전시설 설치내역	비상벨 유무: (설치장소:)				
		안심스크린 유무:				
편의시설 설치내역	화장실 입구(복도포함) CCTV 유무:					
	냉방시설(), 난방시설(), 에어(폐이퍼)타올(), 환풍시설(), 변기종류인식장치() 사용중 인식장치() 기 타 () ※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					
상기 본인은 위 내역과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신청인 서명 또는 인						
안산시장 귀하						
관련서류	화장실 소개서	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(적용의 범위) <신 설></p> <p>①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호에서 “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·제7호·제10호에 따른 관광지·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”이란 「관광진흥법」 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·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.</p> <p>② 법 제3조제9호에서 “「항만법」 제2조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”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 조례는 ----- ----- -----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과 안산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-----.</p> <p>제2조 (적용의 범위) ①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.</p> <p>② 법----- ----- ----- ----- 조례로----- -----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제1항과 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제1항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“「항만법」 제2조제1호-----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조례로 ----- ----- 각 호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제3조 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.

제4조 (설치기준)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~ 5. (생략)

6. 공중화장실에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.

7. (생략)

<신설>

제3조 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-----

-----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-----
시설상태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-----.

제4조 (설치기준)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7.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2 (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)
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시장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다만, 이동식화장실과 간이화장실은 제외한다.

1.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 공중화장실

2. 법 제3조제10호의 도선장에 설치한 공중화장실

3. 법 제3조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야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

4.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화장실

제11조(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) ①
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
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
 있는 시설물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
 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것을 말한
 다.

② ~ ⑥ (생략)

제11조(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) ①
 영 제8조 단서에서-----

 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[별지 제4호서식]

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					
신청인	성명		전화번호		
	주소				
건물 소유주와의 관계					
건축물 현황	건물명		층수	지하: 층/지상: 층	
	주용도		연면적 ㎡	준공일	
개방화장실 현황	면적	총면적: ㎡(남자: ㎡ /여자: ㎡)			
	개방화장실 층	층			
개방 시간	상시개방(), 부분개방()				
시설현황	변기	소변기	개		
		대변기	총 개 (남자: 개/ 여자: 개/장애인용: 개)		
	대변기 유형	동양식: 개, 서양식: 개			
편의시설 설치내역	냉방시설(), 난방시설(), 에어(페이퍼)타올(),				
	환풍시설(), 변기종류인식장치() 사용중 인식장치() 기타 () * 그 밖의 편의시설은 직접기재				
상기 본인은 위 내역과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신청인			서명 또는 인		
안산시장 귀하					
관련서류	화장실 소개서				

[별지 제4호서식]

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					
신청인	성명		전화번호		
	주소				
건물 소유주와의 관계					
건축물 현황	건물명		층수	지하: 층/지상: 층	
	주용도		연면적 ㎡	준공일	
개방화장실 현황	면적	총면적: ㎡(남자: ㎡ /여자: ㎡)			
	개방화장실 층	층			
개방 시간	상시개방(), 부분개방()				
시설현황	변기	소변기	개		
		대변기	총 개 (남자: 개, 남장애이용: 개 / 여자: 개, 여장애이용: 개)		
	안전시설 설치내역	비상벨 설치유무: (설치장소:) 안심스크린 설치유무: 화장실 입구(복도포함) CCTV 설치유무:			
편의시설 설치내역	냉방시설(), 난방시설(), 에어(페이퍼)타올(),				
	환풍시설(), 변기종류인식장치() 사용중 인식장치() 기타 () * 그 밖의 편의시설은 직접기재				
상기 본인은 위 내역과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신청인			서명 또는 인		
안산시장 귀하					
관련서류	화장실 소개서				